

김포시 공고 제 2024-1022호

2024년 김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공고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따라
2024년 김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김 포 시 장



문서번호	예산과-3901
등록일자	2024. 4. 8.
결재일자	2024.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주무관	예산2팀장	예산과장	기획조정실장	부시장	시장 2024. 4. 8.
안수진	박혜경	조은정	두춘언	김규식	김병수
협 조					

2024년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 추진방향

- 주민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행안부 온라인 플랫폼 주민e참여 도입운영
- 교육실시, 숙의과정 지원 등을 통한 참여예산 기구 역량강화 및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를 위한 대상별 및 주제별 예산학교 운영
- 예산편성 기본방향 설정 사업 선정 등 설문조사 실시를 통한 시민의 실질적 참여 확대

◆ 공모 규모 : 40억(시단위 25억, 읍면동단위 주민편익형 10억 일반형 5억)

◆ 연간 추진계획

- 4 ~ 6월 : 제안사업 공모접수
- 6 ~ 8월 : 제안사업 구체화 및 심사, 시민의견 수렴
- 11월 : 2025년 예산안 의회 제출

기획조정실
예산과

2024년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의견 반영 확대를 통해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임

I 운영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김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추진방향

- 주민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행안부 온라인 플랫폼 주민e참여 도입·운영**
- 교육실시, 숙의과정 지원 등을 통한 **참여예산 기구 역량강화 및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를 위한 **대상별 및 주제별 예산학교 운영**
- 예산편성 기본방향 설정, 사업 선정 등 설문조사 실시를 통한 **시민의 실질적 참여 확대**

□ 운영형태

- 분야 및 규모 : 40억('23년 반영결과 : 18개사업 선정, 793백만원)

(단위:백만원)

총규모	시 단위 사업	읍·면·동 단위 사업	
		주민편의형	일반형
4,000	2,500	1,000	500

└ **시단위사업** : 자유형 및 지정제안사업

└ ※ 지정제안사업 주제는 시 주요정책사업 : 다문화, 반려동물 등 사업부서 의견 조화를 통해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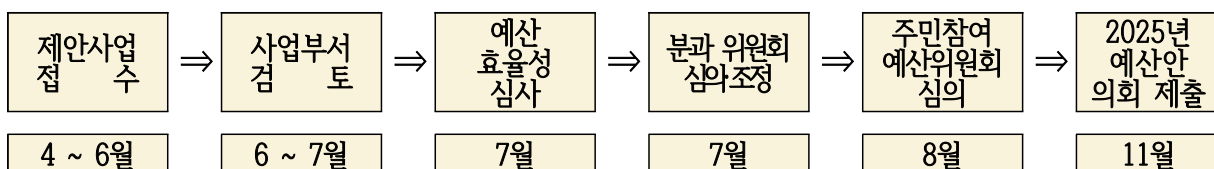
└ **읍면동단위사업** ┌ **주민 편의형** : 다수의 주민에게 수혜성·공공성이 있는 사업(예.도로정비, 배수로공사 등)

└ ※ 읍·면 100백만원, 동 50백만원 범위 내 반영

└ **일반형** : 읍·면·동별 특화사업 등 일반제안사업

└ ※ 읍·면·동 당 2~30백만원 범위 내 반영

○ 추진일정



※ 예산부서에서 제안사업 총괄 취합(읍면동 단위사업 포함) 사업부서 검토 결과 예산효율성 심사 후 위원회 심사

II

2023년도 운영성과 및 개선점

□ 운영성과

○ 2023년 주민참여예산('24년 시행)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한도액	편성액	사업 유형 구분			비고
		시 단위 사업	읍·면·동 단위 사업	읍·면·동 자치계획형사업	
7,000	1,292 (18건)	503 (1건)	289 (17건)	500 ※ 공모사업자 선정절차 진행중	

- 성별, 지역, 연령 등 다양성 및 균형성을 확보한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지역회의 위원, 다문화가족, 청소년 등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예산학교 운영
-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 조사 및 '23년 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실시 등 시민의 실질적 참여 확대

□ 문제점

- 시 재정여건 상 한도액 범위 내 예산 편성 저조
- [읍·면·동 단위사업] 한도액 균등 배분에 따른 형식적 사업 발굴
 - '23년 운영계획 수립 시, 예산효율성 심사 강화 및 객관적 평가(지역회의 운영실적 및 인구 규모)를 통한 사업 차등 선정하여 개선코자 하였으나,
 - 특색사업 발굴 한계로 평가 무의미, 사업 실효성 및 예산 적정성 심사 미흡
- [자치계획형 사업] 주민자치회 운영과 연계, 주 추진부서 이원화로 연말 운영방식 변경사항 발생 등 참여예산 운영 차질

□ 개선점

- 시민 제안사업 반영률 제고를 위한 **참여예산제도 고도화**
 -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위원교육실시 및 예산학교 운영
- [시단위사업] 수변길 조성 시민안전 다문화 반려동물 등 **사업부서 의견 조화를 통한 주제 선정 실시**
- [읍·면·동 단위사업] **주민편익형과 일반형으로 구분 운영**
 - 주민 편익형 : 다수의 주민에게 수혜성·공공성이 있는 사업(ex.도로정비, 배수로공사 등)
※ 읍·면 100백만원, 동 50백만원 범위 내 반영
 - 일반형 : 읍·면·동별 특화사업 등 일반제안사업 ※ 읍면동 당 2~30백만원 범위 내 반영
- [자치계획형 사업] **주민자치회 운영 일정에 맞게 자치행정과 별도 추진**
- 예산 낭비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실효성 및 예산 적정성 등 **예산효율성 심사 강화**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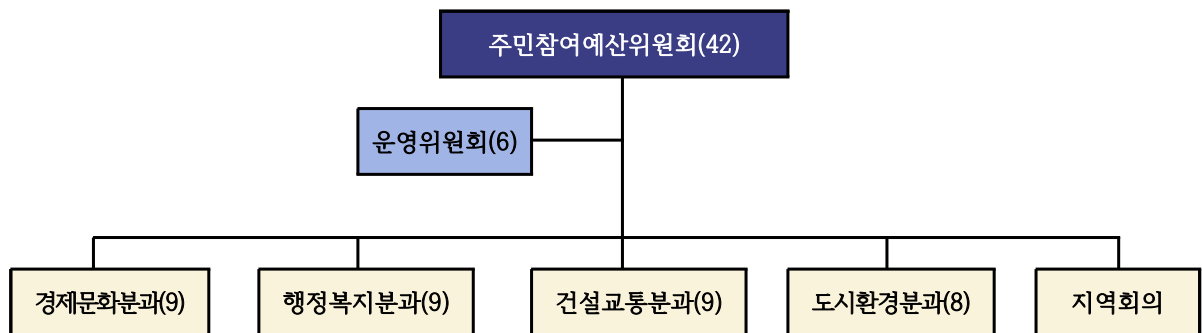
2024년도 운영계획

1 온라인 플랫폼 주민e참여 도입 및 운영

- 문제점 : 제안사업 수기관리, 참여예산위원회 위주의 운영, 상이한 참여수단 등
- 개선사항 : 온라인 플랫폼 도입 운영, 사업제안, 주민투표 심사과정 실시간 공개
- 기대효과 : 주민접근성 강화, 모바일 전자투표 실시, 참여예산의 투명한 공개

2 참여예산 기구 강화 및 활성화

*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42명 (당연직7, 위촉직35), 임기 : 2년 2023. 4. 28. ~ 2025. 4. 27.]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의원 포함)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시 주요 투자사업 주민의견서 작성을 통한 일반참여예산 주민참여 확대
-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실시

3 제도이해 교육 및 홍보 강화

- 예산학교 운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실시로 주민관심도 제고
 - (온 라 인) 홈페이지, 블로그, SNS, 앱광고 등 팝업 수시 게시
 - (오프라인) 김포마루, 우편물,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민원실 게시판 등 활용

4 시민참여 확대

- 2025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주민 설문 실시
 - 예산편성 방향, 중점 투자 부문, 주민참여예산제 관심도 등 설문실시로 2025년도 본예산 편성활용 및 주민의견서 첨부(지방재정법 제39조 근거)

5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강화

- 주민참여예산 재정발전유공 표창 ('24년 12월)
 - 훈 격 : 시장
 - 표창인원 : 민간인 1명, 공무원 1명
 - 추천권자 : 예산과장, 사업부서장, 읍·면·동장
 - 추천기준 : 부서 주제발굴, 숙의과정 적극참여, 전국단위 전파 특화사업 발굴 등 제도 활성화 기여 유공

IV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공모 개요

- 집중 접수기간 : 2024. 4 ~ 6월
- 참여대상 : 김포시민 누구나 / 관내 기관 및 단체 재직자
- 접수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접수기간 내 읍면동 민원실 방문, 우편 등 제안서 [별지1] 제출
- 공모분야 및 규모 : 40억

(단위:백만원)

총규모	시 단위 사업	읍·면·동 단위 사업	
		주민편익형	일반형
4,000	2,500	1,000	500

└ 시단위사업 : 자유형 및 지정제안사업

└ ※ 지정제안사업 주제는 수변길 조성, 시민 안전, 다문화, 반려동물 등 사업부서 의견 조화를 통해 선정

└ 읍면동단위사업 ┌ 주민 편익형 : 다수의 주민에게 수혜성공공성이 있는 사업 ex 도로정비, 배수로 공사 등
 └ ※ 읍·면 100백만원, 동 50백만원 범위 내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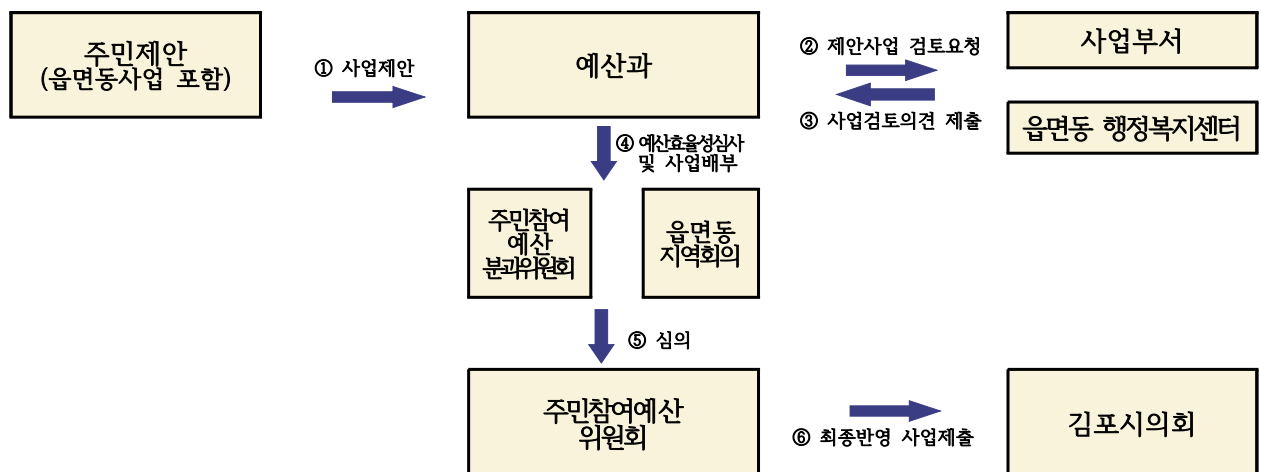
└ 일반형 : 읍·면·동별 특화사업 등 일반제안사업

※ 읍·면·동 당 2~30백만원 범위 내 반영

○ 선정 불가 사업

- ▶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 편성에 관해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
- ▶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비, 경상경비,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선심성 사업
- ▶ 단순 민원 제기성 사업 또는 주민의 이해관계 대립되어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
-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인 경우
 - ※ 계속사업 : 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읍·면·동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사업
- ▶ 공연·축제·행사 등 일회성 사업 또는 3년간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된 사업
- ▶ 청사신축·개보수 및 CCTV설치 등 연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사업
- ▶ 국가·경기도·교육청·경찰서 등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해당기관 이송(타기관 사무)
- ▶ 특정 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

○ 업무처리 흐름도



연간 주요일정(안)

시기	주요일정	비고
4월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연간 운영 계획 수립 및 보고	
	2024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공고 및 홍보 (집중 접수기간 4 ~ 6월)	
	읍·면·동별 지역회의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읍·면·동별 지역회의 위원 구성, 공개모집)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매뉴얼 배포 및 교육	
5월	대상별 · 세대별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역량강화 교육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6월	제안사업 구체화 및 적정성 사업부서 검토(1차)	
7월	제안사업 구체화 및 적정성 사업부서 검토(2차)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2024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회의 개최(사전 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 선호도 순위 시민투표	
8월	제안사업 구체화(최종) 및 현장실사	
	2024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최종 심의)	
9월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리뉴얼	
10월	2025년 시 일반예산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 회의	
11월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의견서 의회 제출	
12월	2024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마무리 및 성과평가 환류	

협조부서	주요내용
전 부 서	· 부서별 단체·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계층에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협조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적극 반영 협조(주민e참여 시스템이용) - 제안자 의도 파악, 현장 확인 후 사업 구체화 - 적정성 검토 의견서 충실 작성 회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현장실사 시 제안 설명 협조 ·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 실현 -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예산편성 -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속집행 철저
읍 · 면 · 동	· 읍·면·동 특화사업 발굴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홍보·발굴·접수·취합 협조 - 집중 접수기간 내 접수창구 운영 - 찾아가는 참여예산 설명회·접수창구·예산학교 모집 운영 · 지역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 일반주민 및 청소년·여성·장애인 우대하여 구성 - 일반 주민 대상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우선순위 선정 - 주민참여예산사업 변경·추진 불가 사유 발생 시 안건 상정
자 치 행 정 과	· 자치계획형사업 운영 - 사업 선정 및 예산편성 과정 지원
홍 보 담 당 관 (홍보관련 기타부서)	· 홍보담당관 온-오프라인 홍보 협조 - 시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 개선 - 김포마루 주민참여예산 기획보도 및 참여 인증 이벤트 -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 SNS 등 홍보매체 활용 카드뉴스(모션·인포그래픽) 제작 - 시 운영 앱, 전광판 등 홍보 협조

- 붙임 1.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첨부서류(관련법령, 2024년 사업편성내역, 관련서식 일체) 1부.
3. (참고) 시군별 주민참여예산 현황자료 1부. 끝.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는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총괄 편성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최종 편성	
	건수	최종예산 편성액
합 계	18	792,628
시 단위 정책사업	1	503,128
읍·면·동 단위사업	17	289,500

① 시 단위 사업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관련부서	사업비
	계		503,128
1	반려동물 보건소(공공진료센터) 운영	가족문화과	503,128

② 읍·면·동 단위 사업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289,500	
	통진읍	29,500	
1	동을산3리 주민편의시설 개선 및 홍보물 설치 공사	20,000	
2	수참2리 도로변 환경정비 공사	9,500	
	고촌읍	20,000	
3	자연부락 디지털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20,000	
	양촌읍	20,000	
4	양촌읍 둘레길 편의시설 설치	20,000	
	대곶면	20,000	
5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대곶사거리)	20,000	
	월곶면	20,000	
6	조강2리 노후정자(기울어짐) 교체공사	20,000	
	하성면	20,000	
7	연화봉산 운동기구 및 산책로 설치	20,000	
	김포본동	20,000	
8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	16,000	
9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설치사업	4,000	

연번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장기본동	20,000	
10	장기본동 화단 조성 사업	20,000	
	사우동	20,000	
11	등기소앞 사거리 자투리 정원 조성	20,000	
	풍무동	20,000	
12	공원 환경정비 및 시설물 보수사업	20,000	
	장기동	20,000	
13	장기1통 농배수로 준설공사	20,000	
	구래동	20,000	
14	구래동 이음둘레길 주민편의시설 설치	7,000	
15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13,000	
	마산동	20,000	
16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	20,000	
	운양동	20,000	
17	운양동 회전교차로 환경개선	20,000	

붙임 3

관련 서식

- [별지1]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서
- [별지2] 읍·면·동 지역회의 명단
- [별지3]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구체화 및 검토 의견서
- [별지4] 공모사업 우선순위 결과
- [별지5]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사표
- [별지6] 주민참여예산 추진사업 관리카드
- [별지7]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별지8] 주민참여예산 편성 사업의 변경·추진 불가시 제출 서류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서

2025년도 김포시 예산 편성에 희망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사 업 명				
제 안 자	성 명		주 소	
※ 미기재시 검토 불가	연 락 처		이 메 일	
사업개요	제안배경 (필요성)			
	사업위치			
	사업내용			
	소요사업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확인 및 안내, 컨설팅 및 문의에 대한 답변 등 - 주민참여예산사업 진행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 ○ 수집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읍·면·동 등) ○ 보유·이용기간 : 5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한 의견은 지양바람 - 실현가능성, 타당성, 시급성이 있는 사업 ② 제안자가 불명확한 사람의 제안서(연락처 불명)는 검토할 수 없음 - 처리결과 : 심의가 완료되면 홈페이지에 결과 공고 ③ 예산편성의 사전절차 이행을 위하여 2024년 6월 14일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검토 가능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 http://gimpo.go.kr (시민참여 ▶ 주민참여예산 ▶ 예산에바란다) ② 팩 스 : 031-980-2889(김포시 예산과) ③ 우 편 :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예산과(☎980-2117) (우편번호 : 10109) ④ 방 문 : 김포시청 예산과(본관 3층), 읍·면·동 접수창구			

※ 제출된 제안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반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읍·면·동 지역회의 명단

□ 지역회의 구성일 : 2024. . .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요 경력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구체화 및 검토 의견서

제안자			의견 청취	☒ 전화 ☐ 방문 2024. ○. ○○.	현장 확인	☒ 유 ☐ 무 2024. ○. ○○.
제안사업	○ 제안사업명 : ○ 사업내용 : ○ 제안취지 : ○ 사업위치 :					
검토의견	채택 ☒ 채택 ☐ 불채택 ※검토결과표와 일치하도록 작성					
☒ 제안사업 구체화 ☐ 대안사업 검토						
사업내용	○ 사업명 : ※사업내용에 맞게 변경 ○ 사업기간 : 2025. . . ~ 2025. . . ○ 규모 : ○ 사업효과 : ○ 사업비 :					
사업비 산출내역	통계목	산출내역			2025년 본예산 요구액	
향후 추진계획						
검토확인	○○과장	○○○	○○팀장	○○○	담당자 (행정번호)	○○○ (☎)
위치도 (크기 조절) (위치 표시) 			현장사진 (크기 조절) (원경)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결과표

	검토 항목		사업부서 검토 ※ 해당 칸 표기 후 부적정 해당 시 제외사유 필수 작성			예산 부서 검토	비 고
			적정	부적 정	제외사유		
적 정 성 검 토	법령위반소지				(관련 법령) 선거법 ○조 ○항 (내용 명기)		
	장기검토과제				예산 편성전까지 사전절차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월) 이행 불가		
	목 적 외 사 업	일회성(행사·축제성) ※기준: 연4회 및 회당 500만원 미만			(구체적사유)		
		인건비·경비성			(구체적사유)		
		행정 내부 운영 예산 ※공공청사 기능보강 등			(구체적사유)		
		국도비 매칭 사업			(구체적사유)		
		자산취득성 사업			(구체적사유)		
		사익추구 ※특정인 특혜·선심성			(구체적사유)		
		민원성·주민 갈등 소지			(구체적사유)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불가피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장구 후 가능			(구체적사유)		
	유 사 중 복 사 업	주민참여예산 기추진* 사업 *2021년~2023년			해당사업명(진행연도)		
		시에서 추진 중·예정인 사업 ※동일지역 동일사업 불가			해당사업명		
		타기관 이송 사무			해당기관명(상세사유)		

사 업 효 과 검 토	종합 의견	
	필요성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공공성	이 사업은 공익 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까?
	효과성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가능성	이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목표 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시급성	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수혜성	이 사업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적정성	이 사업의 경우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기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사표

○ 위원회명 :

○ 심사번호 :

○ 사업명 :

▶ 노란칸 작성(해당 항목별 배점 체크 후 점수 기재)

항목	평가 지표	배점기준					점수
합계							
필요성 (20)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4 매우 미흡	8 미흡	12 보통	16 우수	20 매우 우수	
공공성 (20)	이 사업은 공익 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까?	4 매우 미흡	8 미흡	12 보통	16 우수	20 매우 우수	
효과성 (15)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3 매우 미흡	6 미흡	9 보통	12 우수	15 매우 우수	
가능성 (15)	이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목표 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3 매우 미흡	6 미흡	9 보통	12 우수	15 매우 우수	
시급성 (10)	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2 매우 미흡	4 미흡	6 보통	8 우수	10 매우 우수	
수혜성 (10)	이 사업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2 매우 미흡	4 미흡	6 보통	8 우수	10 매우 우수	
적정성 (10)	이 사업의 경우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2 매우 미흡	4 미흡	6 보통	8 우수	10 매우 우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명_____ 서명_____

주민참여예산 추진사업 관리카드

관리번호		사업명				
주관부서	팀 명	담당자	행정전화	작성일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 (사업위치) ○ (사업내용) - - ○ (기대효과) - -					
사업 추진 현황	☐ 완료 ☒ 추진중 ☐ 불가	○ (추진 실적) - (착공) - (준공) -		예산 사 항	반영액 (천원)	
					집행액 (천원)	
	진도율	%			집행률	%
향후 계획	○ (향후 추진 계획) - -				○ (예산 변경·미집행 사유 및 추후 계획) -	
현황 사진	시행 전		시행 후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부서 :)

대상사업		조사자	
사업명		성명	(서명)
위치		점검일시	2024. . .

○ 항목별 적정 또는 부적정 표기 후 종합의견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모니터링 기준표	적정	부적정
1	당초 사업제안 취지에 맞게 시행되었습니까? (사업위치, 사업내용 등)		
2	현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 착수 여부, 공정률 등)		
3	사업비 산출내역에 예산낭비 요소는 없습니까? (과다산정 등)		
4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5	사업 추진방법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입니까?		
6	사업 시행으로 주민의 편익이 증진되었습니까?		
모니터링 종합의견			

주민참여예산 변경·추진 불가 사유 발생 사업

사 업 명	○○면 마을안길 포장 공사	
위 치	○○면 ○○○길 19-2	
사 업 량	$L=220m(B=3.0m), L=150m$	관련사진
사 업 비	50,000천원	
변 경 내 용	변경된 사업량, 사업비 등	
사 유	구체적으로 상술	

※ 사업 변경의 경우 기존의 사업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 불가